

투자권유준칙

(2014.09.30.)

유진투자선물

목 차

I. 총칙.....	
1. 목적.....	1
2. 용어의 정의.....	1
3. 투자권유 및 판매 일반 원칙.....	2
II. 투자자 구분 등.....	
4. 방문 목적 확인	2
5. 일반·전문투자자의 구분.....	3
III.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	
6. 투자권유를 받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의무.....	3
7. 파생상품등에 대한 특칙 (적정성원칙).....	3
IV. 투자권유 희망 투자자에 대한 판매.....	
8. 투자자정보 파악 및 투자자성향 분석 등	4
9. 투자자정보의 유효기간	5
IV-2. 투자권유.....	
10. 투자권유 절차.....	6
11. 장외파생상품 이외의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권유 특칙	7
12.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특칙	8
13. 투자권유시 유의사항.....	8
IV-3. 설명의무.....	
14. 설명의무.....	10
V.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	
15.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	12
VI. 그 밖의 투자권유 유의사항.....	
16. 계약서류의 교부 및 계약의 해제.....	12
17. 손실보전 등의 금지.....	13
18.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금지행위.....	13
19.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에 대한 특칙.....	16
20.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금지행위.....	17

1. 총칙

1. 목적

이 투자권유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과 투자권유대행인(이하 “임직원등”이라 한다)이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준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법시행령, 법시행규칙,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규정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투자권유”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신탁계약(관리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 법 제9조제4항
- 2) “포트폴리오투자”란 투자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둘 이상의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 3) “파생상품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 법 제46조의2제1항
 - 가. 파생상품
 - 나. 법시행령 제52조의2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

3. 투자권유 및 판매 일반 원칙

임직원등은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및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임직원등은 관계법령등을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법 제37조제1항
- 2)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거래의 특성과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

하여야 한다.

- 3) 임직원등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스스로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 4) 임직원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회사 또는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37조제2항

II. 투자자 구분 등

4. 방문 목적 확인

- 1) 임직원등은 투자자 방문시 투자자의 방문 목적 및 투자권유 희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2)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투자권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투자자가 원하는 객관적인 정보만을 제공하여야 한다.

5. 일반·전문투자자의 구분

- 1)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해당 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법 제46조제1항
- 2) 임직원등은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일반투자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법 제9조제5항 단서
- 3) 주권상장법인이 회사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단, 해당 법인이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로 본다. ☞법 제9조제5항제4호단서

III.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

6. 투자권유를 받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의무

- 1)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6조제2항(투자자정보 파악) 및 제3항(적합성원칙)에 따른 의무를 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는 의사를 투자자로부터 서면 또는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확인[별지 제1호]받아야 한다.
- 2)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원금손실 가능성, 투자에 따른 손익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등 투자에 수반되는 주요 유의사항을 알려야 한다.
- 3) 임직원등은 투자자에 대한 투자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투자자가 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 전에 해당 투자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 법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투자자는 제외한다. ☞법 제124조제1항

7. 파생상품등에 대한 특칙 (적정성원칙)

- 1) 임직원은 투자자에게 파생상품등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그 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이하 “투자자정보”라 한다)를 파악하여야 한다. ☞법 제46조의2제1항
- 2) 임직원은 1)에 따라 파악한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해당 파생상품등이 그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파생상품등의 내용, 해당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해당 투자가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고 투자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전자우편과 유사한 전자통신, 우편 또는 전화자동응답시스템(이하 “서명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적정성 판단의 기준은 10.부터 12.까지의 적합성판단을 위한 기준에 따른다. ☞법 제46조의2제2항, 법시행령 제52조의2제2항 및 제3항

IV. 투자권유 희망 투자자에 대한 판매

IV-1. 투자자정보

8. 투자자정보 파악 및 투자자성향 분석 등

- 1)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자정보를 [별지 제2호]의 투자자정보 확인서에 따라 파악하고, 투자자로부터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법 제46조제2항

※ 참고사항

- ▶ 투자자정보 확인서 작성 방법 : 투자자정보는 반드시 투자자가 자필로 작성할 필요는 없음. 직원이 면담과정에서 파악한 정보를 컴퓨터 단말기에 입력하고 이를 출력하여 투자자에게 확인받는 방법도 가능함

- 2) 임직원등은 1)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을 [참고 1]에 따라 scoring한 후 분류된 투자자의 성향(이하 “투자자성향”이라 한다)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법 제46조제2항
- 3) 임직원등은 원칙적으로 투자자 본인으로부터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대리인이 그 자신과 투자자의 실명확인증표 및 위임장 등 대리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는 경우 대리인으로부터 투자자 본인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위임의 범위에 투자자정보 작성 권한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참고사항

- ▶ 회사가 사용하는 위임장 양식에 “투자자정보 작성 권한 위임 여부”를 기재 - 본 준칙에서 규정하는 ‘대리인’은 ‘임의대리인’의 경우를 상정하고 있으며, 법정대리인의 경우 관련법령 또는 법원의 명령 등 법정대리권의 발생근거에 따라 대리권의 확인방법이 달라질 수 있음
(예 :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회사에서 투자권유를 받는 경우에는 임의대리인의 경우와 같이 본인인 자녀로부터 수권행위가 있을 수

없으므로, 이 경우 자녀에 대한 친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법정대리권이 있음이 확인되면 별도로 자녀에 대한 투자자정보 작성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음)

- 4) 임직원등은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일반투자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 하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그 거부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받아야 한다.[별지 제1호]
- 5) 임직원등은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로 간주하고 “Ⅲ.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절차를 따른다.

9. 투자자정보의 유효기간

- 1) 임직원등은 투자자로부터 별도의 변경 요청이 없으면 투자자정보를 파악한 날로부터 36개월(투자자정보 유효기간) 동안 투자자정보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2)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1)을 설명하고 투자자정보가 변경되면 회사에 변경내용을 통지하도록 알린 후 투자자로부터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별지 제2호]
- 3) 임직원등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정보 유효기간 경과 여부를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투자자정보를 다시 파악하여야 한다.

※ 참고사항

- ▶ 유효기간의 만기가 지난 경우 유효기간 만기일 이후 최초 투자권유 시점에 투자자정보를 새롭게 파악하도록 함

- 4) 1)부터 3)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계약이 체결된 투자자의 경우에는

매분기 1회 이상 투자자의 재무상태 및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제2호

IV-2. 투자권유

10. 투자권유 절차

- 1) 임직원등은 회사가 정한 [참고 3]의 적합성판단 기준에 비추어 보아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46조제3항

※ 참고사항

- ▶ 회사는 투자자의 투자자성향을 특정 유형별로 분류한 경우, 회사가 정한 투자자성향분류와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평가 분류[참고 2]를 참조하여 투자권유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참고 3]을 정하여야 함.
- ▶ 회사는 투자자의 투자자성향을 특정 유형별로 분류하지 않는 경우에도 투자권유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야 함.

- 2) 임직원등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기존 투자자성향을 알리고 투자권유를 하여야 한다.
- 3)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보유 자산에 대한 위험회피 목적으로 투자하거나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등 해당 투자를 통하여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을 낮추거나 회피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
- 4)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금융투자상품에 투자자가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투자가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 및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의 위험성을 알리고 해당 투자자로부터 서명 등의 방법으로 이르고지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별지 제4호]

11. 장외파생상품 이외의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권유 특칙

임직원은 개인인 투자자에게 장외파생상품 이외의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투자자의 연령과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경험등을 추가로 고려한 기준에 따라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참고사항

- 파생상품등은 일반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금융투자상품에 속하므로, 투자자 정보 외에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경험이나 연령 등의 요소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투자권유를 해야함을 의미
- 추가로 고려하여야 하는 항목으로는 본 준칙에서 제시한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경험이나 연령 외에도 회사가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른 항목을 추가 또는 대체할 수 있음

구분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 경험		
	1년 미만	1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취약 금융소비자	- 파생상품 권유불가		
취약 금융소비자를 제외한 일반 투자자	- 파생상품 권유불가	- 장외파생상품 이외의 모든 파생상품등	

※취약 금융소비자 : 만65세이상자, 은퇴자, 주부, 금융투자상품 무경험자 등

12.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특칙

- 1) 임직원은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및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의 상대방이 일반투자자인 경우에는 투자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그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려는 자산·부채 또는 계약 등(이하 “위험회피대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줄이기 위한 거래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거래를 할 수 있다.

가. 위험회피대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예정일 것

나.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약정거래기간 중 해당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이 위험회피대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2) 이 경우 임직원은 투자자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통하여 회피하려는 위험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법 제166조의2제1항제1호, 법시행령 제186조의2 **[별지 제3호]**

13. 투자권유시 유의사항

- 1)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49조, 법시행령 제54조, 제55조, 제68조제5항제3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8조

가.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

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다.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다만, 증권과 장내파생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각 행위는 제외한다.

(1)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2)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이 경우 다음의 각 금융투자상품 및 계약의 종류별로 서로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가) 금융투자상품 :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나)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 ① 증권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 ②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 ③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다) 신탁계약

- ① 법 제103조제1항제1호의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계약
- ② 법 제10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계약

마. 투자자(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를 받아 투자를 한 경험이 있는 일반투자자는 제외한다)로부터 금전의 대여나 그 증개·주선 또는 대리를 요청받지 아니하고 이를 조건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바. 관계법령등 및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금전·물품·편의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2) 임직원등은 투자자의 투자자성향 및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투자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투자자에게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장기투자를 권유할 수 있다.

3) 임직원등은 투자자의 투자자산이 특정 종목의 금융투자상품에만 편중되지 아니 하도록 분산하여 투자할 것을 권유할 수 있다.

※ 참고사항

- ▶ 임직원등이 투자자에게 **포트폴리오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그 임직원등이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금융투자전문인력(펀드투자상담사, 증권투자상담사, 파생상품투자상담사)으로서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만을 권유할 수 있음
- ▶ 임직원등이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한 투자자에게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투자자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협회에 3종의 투자상담사(펀드투자상담사, 증권투자상담사, 파생상품투자상담사)로서 **모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금융투자상품 중 일부에 대하여만 투자자문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자문할 수 있는 투자상담사로서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되어 있으면 됨 (예: 펀드에 대해서만 자문시 펀드투자상담사 등록만 필요)
-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자문업자로서 자문하는 경우 ① 투자자의 보유자산 전체가 아닌, 해당 투자시점에서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는 구체적인 금액만을 기준으로 적합성 판단을 하고, ②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한 이후 매도·추가매수 또는 자산가치 변동 등으로 포트폴리오 가중평균위험이 변동되면 포트폴리오 자산 구성 비율을 재조정하도록 안내 또는 확인하는 절차를 두는 것이 바람직함

IV-3. 설명의무

14. 설명의무

- 1)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등(이하 “투자설명사항”이라 한다)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 법 제47조, 법시행령 제53조

- 2) 임직원등은 1)에 따라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투자자의 투자경험과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지식수준 등 투자자의 이해수준을 고려하여 설명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 참고사항

- ▶ 법(제47조)에서는 투자자가 투자설명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이해하였음을 확인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든 투자자에 대하여 동일한 수준으로 기계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음. 즉, 설명의 정도는 금융투자상품의 성격 및 투자자의 지식·경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따라서, 신규 상품, 구조가 복잡한 상품이나 위험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또는 금융지식이 부족한 투자자나 취약투자자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설명이 좀 더 필요할 수 있으며,
- 동일 또는 유사 상품에 대한 투자 경험이 있거나 해당 상품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은 투자자 등에게는 보다 간단한 설명이 가능할 것임.

3) 임직원등은 1) 및 2)에 따라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주요 손익구조 및 손실위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임직원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투자자에게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가. 투자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나.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의 경우 법 제123조에 따른 투자 설명서를 판매 전에 교부하는 경우

☞법 제124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제1항제9호나목

※ 참고사항

- ▶ 설명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의 방법으로 확인받는 경우, **[별지 제 6호]**의 확인서를 사용해야 함. 다만, 국공채, 통안채, 지방채(지방공사채 제외) 등 초저위험 상품인 경우 확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 ▶ 설명서 내용 중 원금손실가능성, 예금자보호, 투자위험 등과 관련된 중요단어는 상대적으로 크고 굵은 문자로 표기하여야 함
(예 : A4용지 기준, 다른 글자보다 2pt 이상)

5) 임직원등은 1)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47조제3항

6)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추후에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도록 자신의 성명, 직책, 연락처 및 콜센터 또는 상담센터 등의 이용방법을 알려야 한다.

V.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

15.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

1) 회사는 다음의 요소들을 감안하여 각 금융투자상품별 위험도를 [참고 2]와 같이 분류한다.

가. 정량적 요소 : 과거 가격의 변동성, 원금손실가능범위, 기초자산의 종류 및 구성 비중, 신용등급, 만기, 레버리지 정도 및 금융투자상품의 목표 투자기간 등

나. 정성적 요소 : 상품구조의 복잡성, 거래상대방위험, 조기상환가능성 및 유동성 등

2) 회사는 1)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분류하는 경우 장내파생상품은 다른 금융투자상품(장외파생상품을 제외한다)보다 높은 위험도로 분류한다.

※ 참고사항

▶ 회사는 투자자가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당해 회사의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표를 상담창구에 비치하고, 투자권유시 이를 활용하여 다른 금융투자상품과의 비교 등의 방법을 통해 상대적인 위험수준을 설명하여야 함

3)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위험도 분류를 하는 경우 외부기관이 작성한 위험도 평가기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4) 임직원등은 포트폴리오투자의 경우, 이를 구성하는 개별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투자금액 비중으로 가중 평균한 포트폴리오 위험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포트폴리오의 구성, 운용전략 및 위험도 측정 등을 회사의 전문조직에서 결정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한다.

VI. 그 밖의 투자권유 유의사항

16. 계약서류의 교부 및 계약의 해제

1) 임직원은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서류를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내용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 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가. 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하는 등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기 위한 기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 나. 투자자가 계약서류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 다. 투자자가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계약서류를 받을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로서 투자자의 의사에 따라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2) 임직원은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한 투자자에게 1)에 따른 계약서류를 교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투자자문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법 제59조제1항, 제2항, 법시행령 제61조

17. 손실보전 등의 금지

임직원등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103조제3항(신노후생활연금신탁, 연금신탁, 퇴직일시금신탁)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가.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 나.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 다.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 라.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법 제55조

18.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금지행위

1) 과당매매의 권유 금지

임직원등은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반투자자에게 빈번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 또는 과도한 규모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특정거래가 빈번한 거래인지 또는 과도한 거래인지 여부는 다음의 사항을 감안하여 판단한다.

가.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의 총액

나. 투자자의 재산상태 및 투자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다. 투자자의 투자지식이나 경험에 비추어 해당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

라. 개별 매매거래시 권유내용의 타당성 여부

☞법 제71조, 법시행령 제68조제5항제2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제1항제5호가목

2) 자기매매를 위한 권유 금지

임직원은 투자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매매하는 경우 외에 증권시장 등에서 회사 또는 자기계산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유리하게 또는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투자자에게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제1항제5호나목

3) 부당한 권유 금지

가.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여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거나 매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시행령 제68조제5항제5호

나. 임직원은 투자자에게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시행령 제68조제5항제9호

다. 임직원은 법 제5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및 법 제71조(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또는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시행령 제68조제5항제11호

라. 임직원은 신뢰할 만한 정보·이론 또는 논리적인 분석·추론 및 예측 등 적절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나 특정한 매매전략·기법 또는 특정한 재산운용배분의 전략·기법을 채택하도록 투자자에게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제1항제5호다목

마. 임직원은 해당 영업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이해가 아닌 다른 특별한 사유(회사의 인수계약 체결, 지급보증의 제공, 대출채권의 보유, 계열회사 관계 또는 회사가 수행중인 기업인수 및 합병 업무대상,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 등)로 그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이나 매매와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게 되는 경우에 그 내용을 사전에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투자자가 매매권유당시에 해당 이해관계를 알고 있었거나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다만, 조사분석자료에 따른 매매권유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매매를 권유한 임직원이 그 이해관계를 알지 못한 경우. 다만, 회사가 그 이해관계를 알리지 아니하고 임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한 경우는 제외한다.

(3) 해당 매매권유가 투자자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만, 조사분석자료에 따른 매매권유의 경우는 제외한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제1항제5호바목

바. 임직원은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는 대가로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의 발행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등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재산적 이익을 제공받아서서는 아니 된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제1항제5호아목

사. 임직원은 신용공여를 통한 매매거래를 원하지 않는 투자자에게 이를 부추기거나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용공여를 통한 매매거래를 원하는 투자자에게는 그에 따르는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아. 임직원은 매매거래에 관한 경험부족 등으로 임직원등의 투자권유에 크게 의존하는 투자자에게 신용공여를 통한 매매거래나 과다하거나 투기적인 거래, 선물·옵션 등 위험성이 높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19.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에 대한 특칙

- 1) 임직원등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자료를 미리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 가. 투자자문의 범위 및 제공방법 또는 투자일임의 범위 및 투자대상 금융투자상품
 - 나.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수행에 관하여 회사가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 및 절차
 - 다.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임직원의 성명 및 주요경력
 - 라. 투자자와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회사가 정한 기준 및 절차
 - 마.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과 관련하여 투자결과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및 투자자가 부담하는 책임에 관한 사항
 - 바. 수수료에 관한 사항
 - 사. 투자실적의 평가 및 투자결과를 투자자에게 통보하는 방법(투자일임계약의 경우에 한한다)
 - 아. 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 자. 투자일임계약인 경우에는 투자자가 계약개시 시점에서 소유할 투자일임재산의 형태와 계약종료 시점에서 소유하게 되는 투자일임재산의 형태
 - 차.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때 적용되는 투자방법에 관한 사항
 - 카.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투자일임보고서의 작성대상 기간
 - 타. 그 밖에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 각 호의 사항
- 2) 임직원등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류에 다음

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재내용은 1)에 따라 교부한 서면자료에 기재된 내용과 달라서는 아니 된다.

가. 1)의 각 호의 사항

나. 계약당사자에 관한 사항

다. 계약기간 및 계약일자

라. 계약변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마. 투자일임재산이 위탁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기관의 명칭 및 영업소명

☞법 제97조, 법시행령 제98조

20.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금지행위

임직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1) 및 2)의 경우에는 회사가 다른 금융투자업, 그 밖의 금융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그 겸영과 관련된 해당 법령에서 1) 및 2)의 행위를 금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투자자로부터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

2) 투자자에게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제3자의 금전, 증권 그 밖의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3)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법 제98조제1항, 법시행령 제99조제1항

참고 목차

[별지 제1호] 투자권유 불원(또는 투자자정보 미제공)확인.....	19
[별지 제2호] 일반투자자 투자자정보 확인서.....	20~24
[별지 제3호] 장외파생상품 투자자정보 확인서(법인 및 개인사업자)	25~27
[참고 1] 투자자정보 확인서 scoring 기준(법인 및 개인사업자).....	28
[참고 2]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평가 분류기준.....	29
[참고 3] 투자성향별 투자권유 적합성 판단기준.....	29
[별지 제4호] 부적합 금융투자상품 거래확인.....	30
[참고 4] 적합성 판단 방식(장외파생상품 이외의 파생상품등).....	31
[별지 제5호] 투자권유 불원확인서.....	32
[별지 제6호] 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33~35

[별지 제1호]

■ 투자권유 불원 (또는 투자자정보 미제공) 확인

<input type="checkbox"/>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p>본인은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 본인의 판단에 따라 투자하며, 이 경우 법 제 46조제2항(투자자정보 파악) 및 제3항(적합성 원칙)에 따른 의무를 귀사가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또한 투자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 손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음을 확인합니다.</p>		
.일자 :	.고객의 성명 :	서명/인
	(대리인 거래시 대리인 성명 :	서명/인)

※ 귀하가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귀하에게 적합한 상품을 투자권유 할 수 없으며, 관련법령에 따라 파생상품등의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반투자자 투자정보 확인서

- “일반투자자 투자정보 확인서”는 회사가 고객의 투자목적, 재산 및 소득상황, 투자경험,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지식, 위험선호도, 투자예정기간 등을 감안한 적합한 투자권유를 하기 위하여 제출받는 서류입니다.

- 고객께서 회사로부터 고객의 투자정보에 부합하는 적합한 투자권유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투자자 투자정보 확인서”를 성실히 기재하여 회사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 고객께서 제공한 투자자정보는 별도의 요청이 없는 한 36개월간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며 36개월이 경과한 이후 최초의 투자권유 시점에 투자자정보를 새로이 제공하여야 합니다.

- 고객께서 제공한 투자자정보가 변경되면 변경내용을 회사에 통지해 주셔야 합니다.

-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을 제공한 경우에는 적합한 투자권유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고객의 투자위험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 금융투자회사는 본 “일반투자자 투자정보 확인서”를 참조하여 해당 금융투자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한 서식에 따라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정보 변경여부>

<input type="checkbox"/> 기존정보와 동일	<input type="checkbox"/> 정보 변경
-----------------------------------	--------------------------------

<기초정보>

PART 1		배점
1. 고객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19세 이하 <input type="checkbox"/> 20세 ~ 40세 <input type="checkbox"/> 41세 ~ 50세 <input type="checkbox"/> 51세 ~ 60세 <input type="checkbox"/> 61세 이상	
2. 고객님의 투자하고자 하는 자금의 투자 가능 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6개월 미만 <input type="checkbox"/> 6개월 이상 ~ 1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1년 이상 ~ 2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2년 이상 ~ 3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3년 이상	
3. 다음 중 고객님의 투자경험과 가장 가까운 금융상품은 어느 것 입니까? (중복응답 가능)	<input type="checkbox"/> 은행 예·적금, 국채, 지방채, 보증채, MMF, CMA 등 <input type="checkbox"/> 금융채, 신용도가 높은 회사채, 채권형 펀드, 원금보장형 ELS 등 <input type="checkbox"/> 신용도 중간 등급의 회사채, 원금의 일부만 보장되는 ELS, 혼합형 펀드 등 <input type="checkbox"/>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 주식,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ELS, 시장수익을 수준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펀드 등 <input type="checkbox"/> ELW, 선물옵션, 시장수익을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펀드, 파생상품펀드, 주식 신용거래 등	
4. 고객님의 금융상품 투자에 대한 본인의 지식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매우 낮은 수준 투자의사결정을 스스로 내려본 경험이 없는 정도 <input type="checkbox"/> 낮은 수준 주식과 채권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정도 <input type="checkbox"/> 높은 수준 투자할 수 있는 대부분의 금융상품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정도 <input type="checkbox"/> 매우 높은 수준 -	

	금융상품을 비롯하여 모든 투자대상 상품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	
5. 고객님께서 투자하고자 하는 자금은 고객님의 전체 금융자산(부동산 등을 제외) 중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합니까?	<input type="checkbox"/> 10% 이하 <input type="checkbox"/> 10% 초과 ~ 20% 이하 <input type="checkbox"/> 20% 초과 ~ 30% 이하 <input type="checkbox"/> 30% 초과 ~ 40% 이하 <input type="checkbox"/> 40% 초과	
6. 다음 중 고객님의 수입원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input type="checkbox"/> 현재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 <input type="checkbox"/> 현재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나, 향후 감소하거나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 <input type="checkbox"/> 현재 일정한 수입이 없으며, 연금이 주 수입원임	
7. 고객님의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다음 중 고객님의 감내할 수 있는 손실 수준은 어느 수준입니까?	<input type="checkbox"/> 무슨 일이 있어도 투자 원금은 보전되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투자원금에서 최소한의 손실만을 감수할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투자원금 중 일부의 손실을 감수할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기대수익이 높다면 위험이 높아도 상관하지 않겠다.	

<위험선호도>

PART 2	
<p>8. 다음 중 고객님의 투자목표와 투자성향을 가장 잘 설명하는 투자자 유형은 무엇입니까?</p> <p>(필요시 판매 직원에게 설명을 요청하기 바랍니다)</p>	<p><input type="checkbox"/> 안정형 예금 또는 적금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하며,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음</p> <p><input type="checkbox"/> 안정추구형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은 최소화하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수준의 안정적인 투자를 목표로 함. 다만, 수익을 위해 단기적인 손실을 수용할 수 있으며,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위해 자산 중 일부를 변동성 높은 상품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p> <p><input type="checkbox"/> 위험중립형 투자에는 그에 상응하는 투자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일정수준의 손실위험을 감수할 수 있음</p> <p><input type="checkbox"/> 적극투자형 투자원금의 보전보다는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 실현을 추구함. 투자자금의 상당 부분을 주식, 주식형펀드 또는 파생상품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p> <p><input type="checkbox"/> 공격투자형 시장평균 수익률을 훨씬 넘어서는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자산가치의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적극 수용. 투자자금 대부분을 주식, 주식형펀드 또는 파생상품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p>

<기타>

PART 3	
<p>고객님께서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상품펀드에 투자한 경험이 있으신 경우 투자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p>	<p><input type="checkbox"/> 투자기간 (년 월)</p>

PART 4

<p>고객님께서서는 취약한 금융소비자에 해당 되십니까?</p>	<input type="checkbox"/> 취약 금융소비자 해당 여부 (Yes <input type="checkbox"/> / No <input type="checkbox"/>) - 만65세 이상 투자자 - 은퇴자 - 주부 - 금융투자상품 무경험자등
---	---

본인은 투자위험에 대한 본인의 성향이 올바르게 명시되어 있으며, 본인이 제공한 정보가 정확함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성명	서명/인	날짜	년	월	일
--------	------	----	---	---	---

※ “일반투자자 투자정보 확인서”의 작성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그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변경 또는 신규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투자권유 희망여부>

<input type="checkbox"/> 투자권유 희망	<input type="radio"/> 고객정보 제공 <input type="radio"/> 고객정보 미제공
<input type="checkbox"/> 투자권유 불원	

(투자자정보가 기존 정보와 동일 한 경우)

본인은 상기 투자자정보 확인서상의 내용이 변동 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일시 : 년 월 일

고객명 : (인 또는 서명)

○○ 회사(주) ○○지점 상담자명 : (인 또는 서명)

장외파생상품 투자자정보 확인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

- ▶ 관련 법률에 따라 회사가 일반투자자인 투자자에게 장외 파생상품거래를 권유하려는 때에는, 그 전에 면담, 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정보를 파악하고 투자자의 기명날인(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확인 받은 내용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합니다.
- ▶ 파악한 정보는 투자자에게 적정한 파생상품을 권유하는 데 활용합니다.
- ▶ 또한 일반투자자가 회사의 권유 없이 스스로의 결정으로 "파생상품등"을 거래하려는 경우에도 면담, 질문 등을 통하여 그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투자(거래)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해당 파생상품이 그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리고, 투자자로부터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도록 관련 법률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최대한 투자자의 상황에 부합하거나 가장 가까운 항목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자께서 잘못된 답변을 하거나 불성실한 답변을 하시면 회사는 투자자와의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거절하거나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추천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투자자께서 부담하는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유형	상장기업 <input type="checkbox"/>	비상장기업 <input type="checkbox"/>	개인사업자 <input type="checkbox"/>
-------	-------------------------------	--------------------------------	--------------------------------

I. 투자자의 재무현황

1. 재무현황

자산 총계 : _____	외화자산 총계 : _____
부채 총계 : _____	외화부채 총계 : _____
연간 수출총액 : _____	연간 수입총액 : _____
금융투자자산 보유금액 : _____	

2. 현재 보유하고 있는 파생상품 거래의 종류 및 약정잔액[모든 금융기관 포함]

II. 거래의 목적

거래목적	예	아니오
투자자께서는 위험회피(헤지) 목적으로 아래 거래를 체결하고자 합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II. 거래하고자 하는 장외파생상품의 종류

1. 거래하고자 하는 기초자산의 종류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화	이자율	상품	기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위험회피(헤지)하고자 하는 해당 기초자산의 보유 내역 및 금액, 보유 경위 등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V. 상품에 대한 이해 수준

1. 장외파생상품 최고 의사결정자*			
소속부서 :	직 급 :	성 명 :	
관련경력 :	관련 자격 :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지식 보유 정도	상 : (전문가 수준) :	중 :	하 :
2. 장외파생상품 거래체결 담당자*			
소속부서 :	직 급 :	성 명 :	
관련경력 :	관련 자격 :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지식 보유 정도	상 : (전문가 수준) :	중 :	하 :
3. 투자자의 대표자 및 위에서 언급한 임(직)원 들이 모두 거래하고자 하는 장외 파생상품거래의 조건과 그에 수반하는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4. 투자자께서 거래하고자 하는 장외파생상품이 투자자께서 회피하고자 하는 위험의 속성 및 규모에 비추어 적합합니까?			
예 :	아니오 :		

※ 투자자가 법인 등 단체인 경우 대표자 이외의 임직원이 회사와 거래를 실행하는 경우로서 별도 양식으로 그 임직원의 인적 사항과 거래 인감(서명감)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V. 위험관리능력

위험관리능력	예	아니오	비 고
1. 장외파생상품 리스크관리 전담 조직 및 인력 보유 여부			조직명: 인원수:
2. 장외파생상품 위험관리를 위한 규정, 내부통제절차 및 업무절차 보유 여부			규정명:
3. 장외파생상품 위험관리를 위한 별도의 전산시스템 보유 여부			전산시스템명 :

VI. 금융거래수준

투자자께서 지금까지 거래한 경험이 있는 장외파생상품의 종류 및 거래 규모 등에 대하여 다음의 표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 종류	경험유무	건 수	거래연수	거래규모*
선물환(FX Forward)				
FX 스왑(FX Swap)/통화스왑(Currency Swap)				
구조화 통화 옵션(Exotic FX Option): KIKO 등				
금리스왑(Interest Rate Swap)				
신용디폴트스왑(Credit Default Swap)				
상품 파생(Commodity Derivatives)				
기타 유형 :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래규모는 원화 또는 달러화로 표시합니다.

투자자 확인

▶ 본인은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

1.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는 본인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정확히 알려 드린 것입니다.
2. 향후 36개월 동안에는 귀사가 본인의 투자자정보를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설명받았습니다.
3. 본인의 투자자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귀사에 통지하여야 귀사가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받았습니다.

작성일자 : _____년 ____월 ____일

(직 위) _____ (담당자) _____ (서명/인)

(법인명) _____

유진투자선물주식회사 확인

▶ 이 확인서 내용은 유진투자선물주식회사가 투자자와 장외파생상품거래를 하기에 앞서 그 거래가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파악한 정보입니다.

작성일자 : _____년 ____월 ____일

유진투자선물주식회사 (부서명) _____ (담당자) _____ (서명/인)

<참고사항>

※ 예시의 장외파생상품 투자자정보 확인서는 투자권유에 필요한 정보를 회사에 제공하기 위해 투자자가 작성하는 양식이며, 만약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 파생상품등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별지 제4호]의 부적정 파생상품등 거래 확인를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고객이 기명날인(또는 서명)한 본 확인서 사본에 회사가 기명날인한 후 이를 고객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고객이 기명날인(또는 서명)한 본 조사표 원본은 회사가 보관합니다.

[참고 1]

<투자자정보 확인서 Scoring 기준>

□ 문항별 배점

- 1번 : ① 또는 ②로 응답한 경우 4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점, ④로 응답한 경우 2점, ⑤로 응답한 경우 1점
- 2번 : ①로 응답한 경우 1점, ②로 응답한 경우 2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점, ④로 응답한 경우 4점, ⑤로 응답한 경우 5점
- 3번 : ①로 응답한 경우 1점, ②로 응답한 경우 2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점, ④로 응답한 경우 4점, ⑤로 응답한 경우 5점 (중복응답한 경우 가장 높은 점수로 배점)
- 4번 : ①로 응답한 경우 1점, ②로 응답한 경우 2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점, ④로 응답한 경우 4점
- 5번 : ①로 응답한 경우 5점, ②로 응답한 경우 4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점, ④로 응답한 경우 2점, ⑤로 응답한 경우 1점
- 6번 : ①로 응답한 경우 3점, ②로 응답한 경우 2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1점
- 7번 : ①로 응답한 경우 -2점, ②로 응답한 경우 2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4점, ④로 응답한 경우 6점

□ 점수 계산 방법

- 1번부터 7번까지의 응답결과에 따른 점수를 합산(총점 32점)하고, 이를 100점으로 환산

(예) 1번부터 7번까지의 합이 26점인 경우, $26\text{점}/32\text{점} \times 100 = 81.3\text{점}$

□ 투자성향 분류

- 점수결과에 따라 고객의 투자성향을 5단계로 분류

- 20점이하 : 안정형
- 20점초과 ~ 40점이하 : 안정추구형
- 40점초과 ~ 60점이하 : 위험중립형
- 60점초과 ~ 80점이하 : 적극투자형
- 80점초과 : 공격투자형

[참고 2]

《금융투자상품별 투자위험도 분류기준》

구 분		초고위험 (Speculative Risk)	고위험 (High risk)	중위험 (Intermediate Risk)	저위험 (Low Risk)	초저위험 (Ultra Low Risk)
채 권		투기등급 포함(BB 이하)		회사채 (BBB+~BBB-)	금융채 회사채(A-이상)	국고채 통안채 지방채 보증채 특수채
파생 결합 증권	(ELS, DLS)	원금비보장형		원금 부분보장형	원금보장형	
	ELW	ELW				
주식		신용거래,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관리종목	주 식			
선물옵션		선물옵션				

* 위 기준은 금융투자상품별 투자위험도 분류의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금융투자회사는 동 기준을 참조하여 금융투자상품별 실질 내용과 위험도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분류

*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투자위험도에 따라 5단계로 분류

[참고 3]

《투자성향별 투자권유 적합성 분류기준》

구 분	초고위험 (Speculative Risk)	고위험 (High risk)	중위험 (Intermediate Risk)	저위험 (Low Risk)	초저위험 (Ultra Low Risk)
안 정 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안정추구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위험중립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적극투자형	투자권유불가				
공격투자형					

[별지 제4호]

■ 부적정 파생상품등 거래 확인

귀사가 파악한 본인의 투자성향이 ()등급임을 고지 받았으며, 본인의 투자성향 보다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임에도 불구하고, 귀사로부터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 (본인의 판단에 따라) 투자를 하고자 하며,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의 위험성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해당 상품명 및 위험등급 : () (등급)

.일자 : .고객의 성명 : 서명/인
(대리인 거래시 대리인 성명 : 서명/인)

[참고 4]

적합성 판단 방식 (장외파생상품 이외의 파생상품등)

1. 취약 금융소비자인 개인에게는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권유를 할 수 없다.
2. 취약 금융소비자를 제외한 일반투자자중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이상인 일반 투자자에게는 장외파생상품 이외의 모든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

구분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 경험		
	1년 미만	1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취약 금융소비자	- 파생상품등 권유불가		
취약 금융소비자를 제외한 일반투자자	- 파생상품등 권유불가	- 장외파생상품 이외의 모든 파생상품등	

※취약 금융소비자 : 만65세이상자, 은퇴자, 주부, 금융투자상품 무경험자 등

[별지 제5호]

■ 투자권유 불원 확인서

본인은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 본인의 판단에 따라 (상품명) **에** 투자하며, 이 경우 법 제46조제2항(투자자정보 파악) 및 제3항(적합성 원칙)에 따른 의무를 귀사가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또한 투자시 **원금 손실이 발생** 할 수 있으며, 투자 손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1

고객의 성명 :

자필서명 :

*법제46조제2항(투자자정보 파악)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 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투자자에게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법제46조제3항(적합성 원칙)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고객 보관용)

투자위험등급 : 1등급
[초고위험]

유진투자선물(주)은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초고위험)에서 5등급(초저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 ◆ 대상 금융투자상품 등 : 파생상품
- ◆ 판매회사 및 점포명 : 유진투자선물(주)
- ◆ 판매직원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핵심사항]

- ◇ 이 금융투자상품(계약)은 원금 손실 가능성 (또는 원금 초과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 ◇ 이 금융투자상품(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 이 금융투자상품(계약)의 가장 핵심적인 투자 위험은 아래와 같습니다(해당위험에 체크).
 - 시장위험 : 시장상황 변화에 따른 가격 변동위험
 - 환 위 험 :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손 위험
 - 기타위험 ()
- ※ 이 금융투자상품(계약)의 다른 투자위험과 손익구조 등에 대해서는 설명서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판매회사 보관용)

- ◆ 대상 금융투자상품 등 : 파생상품
- ◆ 상대적 위험도 : 총 (5)단계 중 (1)번째로 높음
- ◆ 판매회사 및 점포명 : 유진투자선물(주)
- ◆ 판매직원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고객 확인 사항]

1. ((투자)설명서)를 (받았음, 받지 않음, 교부를 거부하였음)
2.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 가능함을 알고 있음,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 들었음)
3. 예금자보호대상 아님
4. (상대적 위험도)에 대해 설명을 (들었음, 듣지 못했음)
5. (주요위험) 및 (손익구조)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해했음)

년 월 일

고객성명

서명 또는 (인)

【 기재 방법 】

- ▶ 투자위험등급은 판매사의 자체 위험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 ▶ 위험등급별로 “적색”, “황색”, “녹색”으로 색상을 3단계로 차등화하되, 용지 또는 위험등급칸의 색상을 차등화한다.(위험등급이 5등급인 경우, 1~2등급 : 적색, 3~4등급 : 황색, 5등급 : 녹색으로 분류)
- ▶ 고객 성명 및 서명란은 고객이 직접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 ▶ 고객보관용의 핵심사항(“원금손실 가능성”, “예금자보호대상 아님”, “핵심투자위험”) 기재 Box는 전체 지면의 50% 이상을 차지해야 하며,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크고 굵은 글자로 기재한다.
- ▶ 핵심투자위험은 각 금융투자상품 등의 특성에 맞는 대표적인 위험으로 1~2개를 체크하되, 예시된 위험 이외의 위험인 경우에는 기타위험에 체크하고 해당위험을 판매직원이 직접 기술한다.
대표적인 위험을 체크한다.
- ▶ 판매회사보관용의 내용중 상대적 위험도 괄호안과 고객확인사항중 괄호안의 글자를 고객이 직접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 ▶ 고객보관용은 고객에게 교부하고, 판매회사 보관용은 판매회사가 보관한다.